

제 283회 임시 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2009. 9. 15(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최미애 의원 외 8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9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09년 9월 4일

3.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함.

4. 주요내용

- 도지사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지역아동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안 제5조)
-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안 제6조)
- 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시행계획 및 아동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등의 조정·심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7조)
 - ※ 조례안 : 11조 부칙 1조로 구성

5. 검토의견

가. 제정 동기

- 본 조례안은 아동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현재 운영 실태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놀이 및 오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도내에는 156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음,

다.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업무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규정이 명시되어 조례제정에 따른 법리적인 문제는 없으며, 이미 강원도와 대전광역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하며, 위원회구성 및 기능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발전방안 및 민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경기침체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이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1부.